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82
----------	-------

발의연월일 : 2026. 3. 3.

발 의 자 : 김 현 · 이용우 · 김남희
어기구 · 전용기 · 차지호
정준호 · 최민희 · 이연희
이주희 · 조인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및 명망 있는 과학기술인의 전략적 영입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고등교육의 흐름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일반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직접선거제 또는 간접선거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총장을 선출하고 있음. 이에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인 KAIST도 이사회 중심의 총장 선출 구조에서 벗어나,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수·학생·직원 등 실질적인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총장 선출 과정에 충분

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KAIST 총장 선출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등 여타 국·공립 대학교 수준으로 유연화하여,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구성원 스스로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총장 선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KAIST 총장의 선임 주체를 당초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 나. 총장선임추천위원회에서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사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다.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총장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를 “총장선임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되”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총장의 선정절차 및 선거사무의 위탁) ① 총장 후보자의 추천 및 선임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총장선임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과학기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④ 총장을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원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적용한다.

⑦ 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과학기술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총장 선거운동의 제한) ① 총장을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

(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총장) ① · ② (생 략)	제7조(총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은 <u>정관으로 정하는 바</u>	③ ----- <u>총장선임추천위원회</u>
<u>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u>	<u>를 통해 선정하되</u>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u>	-----
<u>인을 받아야 한다.</u>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7조의2(총장의 선정절차 및 선</u>
	<u>거사무의 위탁) ① 총장 후보자</u>
	<u>의 추천 및 선임을 위하여 과학</u>
	<u>기술원에 총장선임추천위원회</u>
	<u>(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u>
	<u>둔다.</u>
	② <u>추천위원회는 과학기술원에</u>
	<u>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u>
	<u>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u>
	<u>다.</u>
	1. <u>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u>
	2. <u>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u>
	<u>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u>
	<u>따른 선정</u>
	③ <u>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u>
	<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④ 총장을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원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적용한다.

⑦ 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과학기술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총장 선거운동의 제한)

① 총장을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

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
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
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
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
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
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
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
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
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
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
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
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

	<u>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u> <u>1. 선전벽보의 부착</u> <u>2. 선거공보의 배부</u> <u>3. 소형 인쇄물의 배부</u> <u>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의 개최</u> <u>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u>
--	--